

## 2025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2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 양 양 군 수

### □ 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 1. 사업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재 원 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9개 사업		127,751	23,404.5	9,580	52,565.5	42.201	
1	해면양식장 지 원	1개소	4,500	-	1,080 (24%)	2,520 (56%)	9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원대상 :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허가)를 득한 어업인 *단, 바닥식 양식어업 제외</li><li>※ 해삼종자양식장의 향온시설 등 지원은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가능</li><li>○ 지원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면양식장 : 해면양식 기자재</li><li>- 해삼종자양식장 : 월동에 필요한 온풍기 등 향온시설</li></ul></li><li>○ 지원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식용 기자재 및 종자, 향온시설</li><li>- 1인 4.5백만 원 이내</li></ul></li></ul>

연번	사업명	사업량	재 원 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	고수온 대응 지원	2개소	6,734	5,387 (80%)	-	-	1,34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li> <li>○ 지원내용 :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li> <li>○ 지원기준 : 개소당 4,125천원(자부담 포함 금액) 한도</li> </ul>
3	인증부표 보급 지원	150개	8,615	3,017.5 (35%)	860 (10%)	2,152.5 (25%)	2,58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li> <li>※ 신청수량 부표 용량의 60%의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를(신규어장 제외) 반납하는 자</li> <li>○ 지원내용 : 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인증부표 구입지원</li> <li>○ 지원기준 : 대상어장 또는 어선, 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li> </ul>
4	내수면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2개소	940	-	200 (21%)	460 (49%)	28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면허·허가(신고)된 양식장</li> <li>○ 지원내용 : 내수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li> <li>○ 지원기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생제(마이신, 옥소린산, OTC) 및 소독제(수산용포르말린, 과산화수소)</li> <li>- 개소당 1백만원 이내 지원</li> </ul> </li> </ul>
5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1척	14,000	-	2,940 (21%)	6,860 (49%)	4,2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li> <li>○ 지원내용 : 노후 선외기 교체 지원</li> <li>○ 지원기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외기 마력 당 160천 원</li> <li>- 척당 100마력(16,000천 원) 이내</li> </ul> </li> </ul>

연번	사업명	사업량	재 원 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6	낙시어선 활성화 지원	6척	11,962	-	-	8,373 (70%)	3,58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낙시신고를 득한 낙시어선</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시설 및 장비(구명조끼, 구명환, 사다리 등)</li> </ul> </li> <li>○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당 2,000천 원 이내</li> </ul> </li> </ul>
7	활어보관용 냉장고, 냉각기 지원	10척	20,000	-	-	11,200 (70%)	4,8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자망어업 허가 어선</li> <li>○ 지원내용 : 활어보관용 냉장고·냉각기 지원</li> <li>○ 지원기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고 : 척당 2,000천 원 이내</li> <li>- 냉각기 : 척당 6,000천 원 이내</li> </ul> </li> </ul>
8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지원	100명	15,000	-	-	10,500 (70%)	4,5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자망어업 허가 어선</li> <li>○ 지원내용 :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지원</li> <li>○ 지원한도 : 사업비 내 균등분배</li> </ul>
9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1개소	50,000	15,000 (30%)	4,500 (9%)	10,500 (21%)	20,00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수산가공물 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대기업은 제외)</li> </ul> </li> <li>○ 지원대상 설비 : 수산물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li> <li>※ 제외 :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li> </ul>

## 【 참고사항 】

- ①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업체) 또는 주된 사업지가 양양군에 있지 않은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② 해면양식장 지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신청 시 어업권의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 사업 품목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공고일 현재 2025년 사업집행지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기준, 제외대상, 우선순위 등 세부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④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부표로 대체가능)의 60% 이상 페스티로폼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양양군(잡하장)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도 수협중앙회 자재구매부 인증부표 계약단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2. 제외대상

### 가) 공통사항

- ① 어촌계 내·외부 분쟁이 발생한 어촌계(계원) 및 어업인
- ②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해당 어선 (단, 경고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 ③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 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④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⑤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선

※ 단, 공통사항과 사업별 제외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별 제외사항을 우선 적용

## 나) 사업별 제외사항

사업명	내용
해면양식장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li> <li>2.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li> </ol>
고수온 대응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자</li> <li>2.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기간 미 경과자</li> <li>3.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li> <li>4.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 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li> <li>5.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li> <li>6.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여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li> <li>7.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li> <li>-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li> <li>-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li> </ul> </li> </ol>
인증부표 보급지원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p>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p>「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양식장</p>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4년간 동 사업자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 (동일 기종에 한함)</li> <li>2. 최근 4년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li> </ol>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	<p>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와 그 어선</p>
활어보관용 냉장고	<p>최근 3년간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와 그 어선(동일 기종에 한함)</p>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신청)자는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li> <li>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li> <li>3.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li> <li>4.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li> </ul> </li> </ol>

###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

#### (1) 해면양식장 지원(우선순위)

- ① 올해 동 사업 신청자 중 선정이 되지 못한 자
- ② 최근 3년간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금액이 적은 자
- ③ 신청한 사업비 금액이 적은 자(보조금에 한함)
- ④ 주소를 양양군에 두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 주소 기준
- ⑤ 면허(허가) 면적이 작은 자
  - 면허, 허가의 경우 면허 우선순위
- ⑥ 면허(허가) 신규 발급일이 최신인 자
  - \* 최근 3년 동일 품목(크레인, 사료절단기) 지원 시 최후순위 배정
  - 지원년도가 최근일수록 최후순위
  - 지원년도 동일 시 신청 사업비가 클수록 최후순위

#### (2) 고수온 대응 지원(우선순위)

- ① 올해 동 사업 신청자 중 선정이 되지 못한 자
- ②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고수온 특약 가입자
- ③ 최근 3년간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금액이 적은 자
- ④ 신청한 사업비 금액이 적은 자(보조금에 한함)
- ⑤ 주소를 양양군에 두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 주소 기준
- ⑥ 면허(허가) 면적이 작은 자
  - 면허, 허가의 경우 허가가 우선순위
- ⑦ 면허(허가) 신규 발급일이 최신인 자

#### (3) 인증부표 보급지원(우선순위)

- ① 올해 동 사업 신청자 중 선정이 되지 못한 자
- ②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수요가 저조한 경우 어장시설(정치망 등 부표), 어선·어구(구획어업), 양식장 뗏목, 어선·어구(연안어업) 순으로 지원
- ③ 양식장 전체의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 인증부표로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지원 신청 시 추진 계획서 제출)

- ④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⑥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⑦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지정한 인증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 내 양식장, 소득이 낮은 자,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4)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지원(우선순위)**

-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내수면어종)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거 내수면 양식업 면허 또는 육상등 내수 양식업 허가(신고)를 받은 자
- ② 주소를 양양군에 두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 주소 기준
- ③ 면허(허가) 면적이 작은 자
  - 면허, 허가의 경우 면허 우선순위
- ④ 신청한 사업비 금액이 적은 자(보조금에 한함)

**(5)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우선순위)**

- ① 최근 5년간 장비 지원 실적이 적은 어선
- ② 저마력 기관 대체자(해상에서의 높은 파고 등으로 소형어선의 조업 시 안전 우려)
- ③ 선외기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오래된 어선

**(6)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우선순위)**

- ① 최근 5년간 장비 지원실적이 적은 어선

**(7) 활어보관용 냉장고·냉각기 지원(우선순위)**

- ① 최근 5년간 장비 지원실적이 적은 어선

**(8)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가점)**

- ①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 ②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③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④ KFISH 브랜드 제품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중인 업체)

- ⑤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수상업체
- ⑥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⑦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 ⑧ HACCP 시설을 갖춘 업체 또는 HACCP 시설 예정업체
  - ※ 후순위 대상 : 최근 2년간 가공설비 지원을 받은 업체

**(9) 기타사항**

- 군 자체 수산업 여건 및 어업실정에 맞추어 어선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한다.
  - ① 장비 지원 실적이 적은 어업인
    - ※ 기타 제외대상, 시행방법 등은 2025년도 국·도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함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24일간)
- 제출기관 : 양양군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붙임 「별지 서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신청서식(해양수산과에 비치) 및 구비서류**

사업명	신청서식	구비서류
해면양식장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1.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증서 사본 1부 (관리선에 설치하는 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3. 견적서 1부
고수온 대응지원	【별지 제2호 서식】	1.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 *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 함 3. 양식재해보험 고수온 특약 보험증권(해당하는 경우) 4. 견적서 1부
인증부표 보급지원	【별지 제3-1, 2호 서식】	1. 사업신청서 2부. 2. 양식장 면허증 사본 1부.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2. 내수면 양식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사업명	신청서식	구비서류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낙시어선 활성화 지원 활어보관용 냉장고·냉각기 지원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지원	【별지 제5호 서식】	1. 선적증서 사본 1부. 2.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별지 제6호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4.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 6. 문의 및 연락처

### ○ 자원조성팀(☎ 670-2742, 2413, 2743)

: 해면양식장 지원, 고수온 대응 지원, 인증부표 보급지원,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지원

### ○ 수산지원팀(☎ 670-2744, 2416, 2745)

: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낙시어선 활성화 지원, 활어보관용 냉장고·냉각기  
지원, 수산물 보관용 위생상자 지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 신청서

## 1. 양식어업(면허, 허가) 현황

소유자		양식어업 현황					어업권 (어업허가) 소유기간
주소	성명	양식어업 종류	면허(허가) 번호	면적 (ha, m <sup>2</sup> )	면허(허가) 기간	양식 품종	

## 2. 사업계획

### ○ 양식물 생산 장비 구입 계획

신청내용 (장비명)	사업비(천원)				구입 예정일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

### ○ 최근 3년간 (도)보조금 지원받은 현황

- 장비명 :

- 연월일 :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25년도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3-1호 서식 】

##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페스티로폼부표 처리 지원 포함)

1. 신청자(□단체 □개인)

어업의 종류 (양식 품종)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단체장)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총부표보유량 (인증부표 보유량)		이전 지원여부	연도, 부표형태별 지원수량 예) 2017 사출형 200개 2017 피복코팅형 100개

2. 신청사업 규모 \* 단체의 경우 구성원 개별 현황 종합하여 기록

인증부표 보급	부표 형태(1)	규격(L)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용도(2)
	수 량 합 계			금액합계		
페스티로폼 부표		수량(개)	무게(톤)	부피(m³)	비고	

3. 사업비(총 사업비:                    원)

내역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인증부표 보급 (35, 35, 30)	원	원	원	원
페스티로폼부표 (30, 70, 0)	원	원	원	-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 별지 제4호 서식 】

#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종사경력	년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내수면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허가·신고				
		종 류	면허·허가·신고번호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 %)	시군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2. 견적서 1부						





## <첨부(확인)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지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사본)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8.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9.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10.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주요 생산 수산식품
주소	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 (패널구조)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 설비종류 :
- 사업기간 :
-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비 고

-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천원)

###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 자부담 : 총        천원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세부내용	비 고

###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 3. 보조사업의 효과

####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생산 계획				
	2024년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생산 계획					주요 수출국
	2024년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2025년        월        일

###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1.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상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25.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